

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지원과제 2차 모집 공고

부산광역시와 (재)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디자인 개발·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체계적인 디자인 활용 지원 및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성공 모델 발굴·확산을 위해 「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」 참여기업을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4월 21일

(재)부산디자인진흥원장

1.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주도 제품개발 역량을 강화하고, 제품 및 서비스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
- (사업기간) 2025. 5. ~ 2025. 12.
- (지원규모) 20개 과제
 - (유형1)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: 5개 과제, 최대 3.5천만원 지원
 - (유형2) 디자인주도 전략산업 성장지원 : 5개 과제, 최대 3.5천만원 지원
 - (유형3) 디자인기업 제품·서비스 개발지원 : 10개 과제, 최대 1.5천만원 지원
- (지원조건)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과제 선정하여 디자인 개발·개선 지원
 -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
 - 지원금의 20% 이상 수요기업 부담금 필수
(디자인 수행기업 단독 참여시, 디자인 수행기업이 부담금 지급)

※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 아님

※ 특허 및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비용, 지원금 회계정산 수수료 예산편성 필수

※ 컨소시엄 참여시, 지원금은 디자인 수행 기업에게 지급, 수요 기업은 결과물 수령

○ (지원내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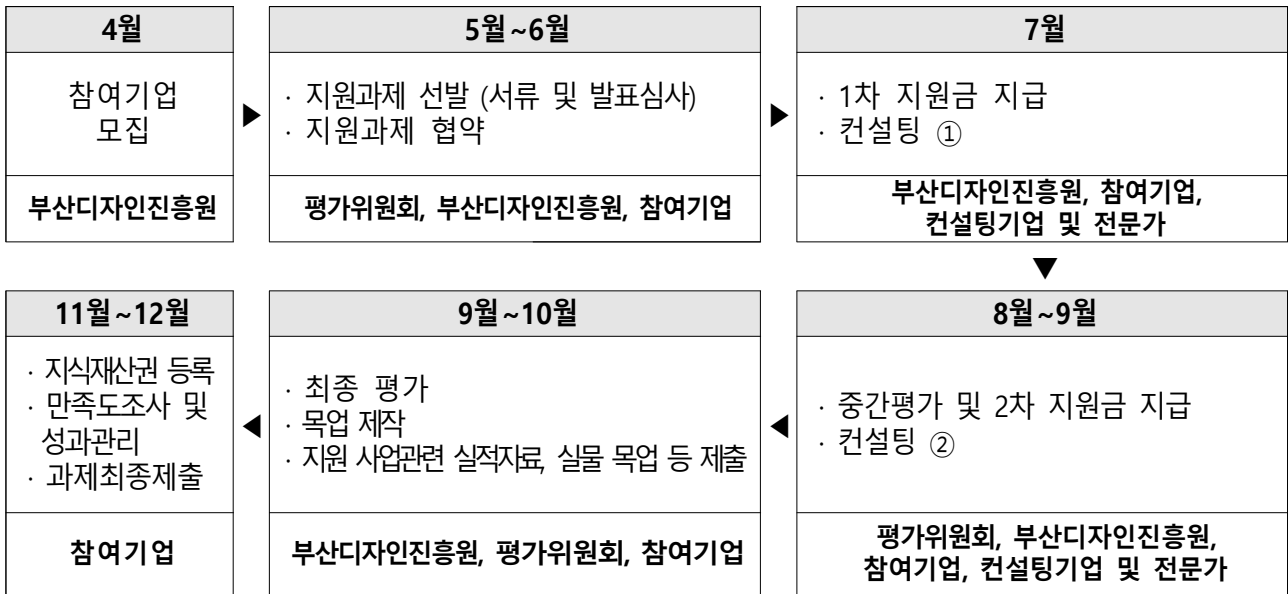
| 구분 | 내용 | 규모 |
|--|--|-------------------|
| <p>(유형1)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내용 : 중소기업(수요기업) - 디자인전문기업(디자인수행기업) 간 협업을 통한 디자인 개발지원 - 지원대상 : 수요기업 + 디자인수행기업 (컨소시엄) * 수요기업 + 디자인수행기업 (컨소시엄) 당 과제 1개 공동신청 - 지원금액 : <u>최대 3.5천만원</u> (차등지원) | <p>5개 과제</p> |
| <p>(유형2) 디자인주도 전략산업 성장지원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내용 :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주도 <u>전략산업*</u> 육성 및 지원 - 지원대상 : 수요기업 + 디자인수행기업 (컨소시엄) 또는 디자인 전문기업 (단독) * <u>해양레저(문화관광), 실버케어(바이오헬스)</u> 분야 * 수요기업 + 디자인수행기업 (컨소시엄) 당 과제 1개 공동신청, 또는 디자인 전문기업 단독 과제 신청 - 지원금액 : <u>최대 3.5천만원</u> (차등지원) | <p>5개 과제</p> |
| <p>(유형3) 디자인기업 제품·서비스 개발지원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내용 : 디자인기업의 주도적 제품·서비스개발 과정을 통한 새 비즈니스 모델 발굴 - 지원대상 : 디자인 전문기업 (단독) * 디자인 전문기업당 과제 1개 신청 - 지원금액 : <u>최대 1.5천만원</u> (차등지원) | <p>10개 과제</p> |

* 수요기업은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내 중복지원 불가

* 타 사업 선정기업(수요기업)은 지원 불가

* 수행기업은 동일하지 않은 아이템으로 중복지원 가능 (※ 2차 지원 공고에 한함)

○ (사업추진일정)



※ 사업 진행에 따라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2. 신청대상

○ (신청자격) 중소기업, 디자인 전문기업

-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, 주사무소 등이 공고일 기준 부산 소재일 것

○ (지원제외)

- 공고된 내용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
-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「민사집행법」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)
-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및 부도기업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'의견거절 또는 '부적장

-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
- 기업, 기업의 장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/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4대 보험 체납 사업장
-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

3. 선정평가

- (평가방법)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청서류 서면 검토 후 대면 발표평가 진행
- (평가일정)
 - 발표평가 대상자 발표 : 2025. 5. 23.(금)
 - 발표평가 자료 제출 : 2025. 5. 28.(수) 14시
 - 발표평가 일정 : 2025. 5. 29.(목) ~ 5. 30.(금)
 - 최종선정 발표 : 개별 연락
 -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각 결과공고 또는 개별 안내 시 확정 일정 필히 참고
- (평가기준)
 - 평가점수 : 90%

| 평가항목 | 세 부 항 목 | 배점 | 평가결과구분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|
| 기술성· 개발능력 (50점) | • 체계적인 과제수행을 위한 사전준비성(절차, 계획 등) | 10 | 가산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점수 100점 에서 ▶ 평가점수 60점 이상 : 선정대상 ▶ 평가점수 60점 미만 : 탈락 |
| | •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| 10 | |
| | •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, 독창성 | 10 | |
| | •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| 10 | |
| 결과활용· 경제성 (50점) | • 수행능력(총괄책임자, 수행기관의 관리, 지원 능력 등) | 10 | |
| | • 실용화 가능성 | 10 | |
| | • 매출성장 가능성 | 10 | |
| | •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| 10 | |
| | • 1년 이내 상품 출시 및 사업화 가능성 | 20 | |
| 합 계 | | 100 | |

- 우대점수 : 10%

| 가점항목 | 가점기준 | 가점 | 과제당 총 인정가점 |
|--|--|-----|------------|
| 부산광역시 지정 선도기업 해당 | 수요기업해당 | 1.5 | 3 |
| | 디자인수행기업해당 | 1.5 | |
| 수요기업부담금 비율 우대 가점 (수요기업 부담금 비율 20%를 기준으로 2% 이상 마다 0.3점을 부여하여, 40% 까지 최대 4점의 가산점 부여) | 22% 이상 | 1.3 | 4 |
| | 24% 이상 | 1.6 | |
| | 26% 이상 | 1.9 | |
| | 28% 이상 | 2.2 | |
| | 30% 이상 | 2.5 | |
| | 32% 이상 | 2.8 | |
| | 34% 이상 | 3.1 | |
| | 36% 이상 | 3.4 | |
| | 38% 이상 | 3.7 | |
| 40% 이상 | 4.0 | | |
| 디자인 확산 활동 참여실적 | 직전 3년간(2022~2024) 부산국제디자인어워드 수상 실적 건당 | 1 | 3 |
| 합 계 | | | 10 |

○ (선정기준)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위원별 점수를
합산하여 합산 점수 상위 기업 선정

- 평가위원회 : 디자인 분야별 전문가 5인 이상 구성

※ 평가위원 중 최고점수(1인) 및 최저점수(1인)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으로 종합점수 확정

○ (추진일정)

| 추진절차 | 시행기관 | 일정(안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사업공고 | 부산디자인진흥원 | '25.4.21.~5.20. |
| ▼ | | |
| 과제신청 | 참여기업 → 부산디자인진흥원 | '25.4.21.~5.20. |
| ▼ | | |
| 사전검토 | 부산디자인진흥원 | '25.5월 중 |
| ▼ | | |
| 서면평가 | 평가위원회 | '25.5월 중 |
| ▼ | | |
| 평가결과 확정 | 부산디자인진흥원 | '25.6월 중 |
| ▼ | | |
| 확정통보 및 이의신청 | 부산디자인진흥원 ↔ 참여기업 | '25.6월 중 |
| ▼ | | |
| 최종확정 | 부산디자인진흥원 ↔ 선정기업 | '25.6월 중 |

*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, 공고 또는 개별 안내 시 일정 필히 확인

4. 신청방법

- (접수기간) 2025. 4. 21.(월) ~ 2025. 5. 20.(화) 14:00 까지
- (제출서류)

| 구분 | 제출 서류 | 유의사항 |
|-----|--|---|
| 공통 | [서식1] 과제 신청서 1부 | - pdf/한글 모두 제출 - pdf 제출 ※ 디자인수행기업 단독 참여시, 해당 기업의 사업자등록증, 증빙, 증명서 제출 |
| | [서식2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 | |
| | [서식3]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| |
| | [서식4] 기업 부담금 지급 약약서 1부 | |
| | [서식5] 특별이행각서 1부 | |
| | [서식6] 정부사업 참여 이력 1부 | |
| | 사업자등록증 각 1부 | |
| |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*신청일 기준 1주일 내 발급 필수 | |
| | 직전년도 총매출 증빙(표준재무제표증명원) 각 1부 | |
| | 지방세·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| |
| 해당시 |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| - pdf 제출 - 증빙 미제출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|
| | 지원서 내 작성된 수상내역, 경력사항, 가점 등 해당 관련 기타 증빙서류 | |

- ▷ 파일명 예시: (서식번호 및 서류명) 기업명
예) (서식1) 부산디자인진흥원 / (사업자등록증) 부산디자인진흥원
- ▷ 유의사항 엄수하여 제출, 서명 등 기입란 필수 입력
- ▷ 선정 후 추가 서류 요청 가능, 일부 서류 원본은 최종 선정기업에게 요청 가능
- ▷ 접수마감 5월 20일 14:00:00 까지, 이후 도착 불인정
- ▷ 사업계획서 누락시 마감 이후 재접수 불가

- (제출방법)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제출
 - 이메일 : act2@dcb.or.kr
 - 이메일 제목 표기 : [유형○] 수요기업_수행기업명_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과제 제출
- (문의처)
 - (재)부산디자인진흥원 기업지원팀 (051-790-1038, act2@dcb.or.kr)

※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

- ▷ 2025. 4. 24.(목) 14:00 (재)부산디자인진흥원 3층 CMF실

5. 기타사항 및 의무사항

○ (기타사항)

- 중소기업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
- 디자인 전문기업은 「산업디자인진흥법」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기업일 것
- 사업 완료 후 상품출시 및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일 것
- 제품개발·개선 및 기업혁신(매출증대, 신상품 출시, 비즈니스모델 전환 등)이 가능한 과제일 것
- 모든 사업 수행과정 현장점검 및 중간·최종보고 결과 사업 이행률 미비 또는 목표 성과달성 불가 판단 시, 기 지급 지원비 회수 또는 지원비 미지급 할 수 있음
- 공모 심사 결과 적격한 지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, 주최 측은 재공고 또는 미 선정 처리 가능
- 재공고 또는 추가모집 시 선정평가는 재공고 또는 추가모집 완료 후 실시할 수 있음
-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,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절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- 타인의 아이디어, 지적 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생기는 모든 피해의 책임은 지원자(사)에게 있음
- 본 사업에 신청한 과제는 수요기업, 디자인수행기업 등 참여기업 및 참여인력에 의해 수행된 적이 없어야 하며, 기존에 수행되었던 사실이 밝혀질 경우,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

○ (의무사항)

- 선정자는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실히 이행해야 함
- 선정자는 운영기관이 진행하는 교육·프로그램 등에 참여해야 함

- 선정자는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
- 선정자는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 체결, 수시 및 최종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함
- 선정자는 협약 종료 연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
- 모든 사업 최종평가 시 실물 목업(Mockup) 및 포트폴리오용 고화질 이미지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
- 과제 수행 시 디자인 컨설팅 및 디자인 법률자문을 통한 지식재산권을 필수로 등록해야 함
- 지원금의 20% 이상 수요기업이 필수로 부담해야 함
(디자인수행기업 단독 참여시, 디자인수행기업이 부담금 지급)

【붙임】

- [서식1] 과제 신청서 1부(컨소시엄, 단독 中 택1)
- [서식2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
- [서식3]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
- [서식4] 기업 부담금 지급 협약서 1부
- [서식5] 특별이행각서 1부
- [서식6] 정부사업 참여이력 1부